

세법연구 19-04

무상이전자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2019. 10

세법연구 19-04

무상이전자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2019.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 상 화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은 주 선임연구원

이 성 현 세무사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12
1.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12
가. 상속세	12
나. 증여세	17
2.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20
가. 양도소득세	20
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26
3. 자산의 무상이전 현황	28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28
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현황	31
III. 주요국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34
1. 미국	34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34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44
2. 영국	49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49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53

3. 일본	58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58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65
4. 캐나다	70
가. 자산의 유·무상이전 시 과세	70
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75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76
1. 국제비교	76
가. 상속세	76
나. 증여세	78
다. 양도소득세	79
라.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81
2. 시사점	85
가.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	85
나.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87
참고문헌	91
부록	93

표 목차

〈표 II-1〉 상속세 과세체계	13
〈표 II-2〉 상속공제	14
〈표 II-3〉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5
〈표 II-4〉 상속세 세율(2019년)	16
〈표 II-5〉 증여세 과세체계	18
〈표 II-6〉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9
〈표 II-7〉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세율	25
〈표 II-8〉 배우자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 비교	27
〈표 II-9〉 상속세 결정현황	29
〈표 II-10〉 증여세 결정현황	30
〈표 III-1〉 미국의 유산세 과세체계	38
〈표 III-2〉 미국의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39
〈표 III-3〉 미국의 증여세 과세체계	42
〈표 III-4〉 미국의 양도소득세 세율	46
〈표 III-5〉 영국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51
〈표 III-6〉 영국의 연간 과세면제금액	55
〈표 III-7〉 영국의 자본이득세 세율	56
〈표 III-8〉 일본의 법정 상속분 적용사례	59
〈표 III-9〉 일본의 상속세 과세체계	60

〈표 III-10〉 일본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계산 사례	61
〈표 III-11〉 일본의 상속세 세율(2019년)	62
〈표 III-12〉 일본의 증여세 세율(2019년)	65
〈표 III-13〉 일본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따른 과세방법	66
〈표 III-14〉 일본의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세율	68
〈표 III-15〉 일본의 무상이전 형태에 따른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	70
〈표 III-16〉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과세 예시	71
〈표 III-17〉 캐나다의 연도별 소득포함률	72
〈표 III-18〉 캐나다의 자본손실 계산 예시	73
〈표 III-19〉 캐나다의 순자본손실 소급공제 또는 최종신고 선택 시 계산 예시	73
〈표 III-20〉 캐나다 연방소득세율(2019년)	74
〈표 IV-1〉 주요국의 상속 시 과세체계 비교	77
〈표 IV-2〉 주요국의 증여 시 과세체계 비교	79
〈표 IV-3〉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체계 비교	81
〈표 IV-4〉 주요국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처분) 시 취득가액 비교	82
〈표 IV-5〉 주요국의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여부	86
〈부표 1〉 연도별 부동산거래 현황	93
〈부표 2〉 월별 부동산거래 현황	95

그림 목차

[그림 II-1] 양도소득 과세체계	24
[그림 II-2] 연도별 부동산 증여 비중	32
[그림 II-3] 2017년 6월 이후 월별 부동산 증여 비중	33
[그림 IV-1] 주요국의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83
[그림 IV-2] 주요국의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84
[그림 IV-3] 취득가액 승계로 추가되는 양도차익	88
[그림 IV-4] 간주양도 시 양도차익	90

I. 서론

- 자산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증여자 입장에서 무상이전 시점에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인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상속인 및 수증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전 자산의 시가만큼의 수증이익이 발생함

- 현행 세법은 자산이 무상이전되는 시점에 상속인 및 수증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수증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는 한편 피상속인 및 증여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상속 및 증여는 양도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 및 증여자로부터 타인에게로 자산이 이전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이는 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유상거래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상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 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때의 가액으로 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로 자산이 이전되는 과세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과세공백 문제는 양도차익이 증가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이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채 상속세 및 증여세만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음
 - 무상이전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한편,
 - 무상이전 자산의 가치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차 부담하지 않은 채 자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또한 존재함

- 자산의 무상이전 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임

- 무상이전 자산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하는 국가도 있고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음
 -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자본이득이란 모든 자산의 가치 증가분이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이라는 이유로 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음
 - 선행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유형을 살펴보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증여시점에 양도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음¹⁾
 - 현재 우리나라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과세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음
 - 채현석·박훈(2007)은 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무상이전을 포함시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소득의 실현시기로 보아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음
 - 안경봉·정희선(2006)은 무상이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맞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될 경우 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취득가액 승계제도를 통해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음

1) 안경봉·정희선, 2006.

-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수증자에게는 수증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견해가 있음²⁾
 - 이중과세로 보는 견해의 근거는 증여자에게 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고 수증자 역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면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고 보는 것임
 - 이중과세로 보지 않는 견해의 근거는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미 가치증가분만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이고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담세력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한만수(2011), 김성균(2007)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에 내재된 미실현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미실현이익을 포함한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 증여세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방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산의 무상이전 거래 시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주요국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를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를 소개한 후 제IV장에서 각 국가의 제도상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2) 김미희, 2014, pp. 39~40.

Ⅱ. 우리나라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1.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가. 상속세

1) 의의 및 과세방식

- 상속이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자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함³⁾
 - 수유자란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의미함
 - 재산상의 권리는 유증, 사인증여재산 등을 포함함
 -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함
 - 사인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함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으로 구분됨
 - 유산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대상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할하기 이전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 유산취득세형은 유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할한 후 분할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

3) 국세청, 2010, p. 2.

-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유산세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2) 과세체계

- 상속세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 채무,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재산에 한해 과세됨⁴⁾

〈표 II-1〉 상속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총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입야,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 5년 이내) - 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한 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아래의 공제를 적용하되 일정한도까지만 공제 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표 II-1〉의 계속

구분	비고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10~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물납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7220100720170212&menu_a=120&menu_b=100&menu_c=3000, 검색일자: 2019. 5. 27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업·영농상속공제 등이 있음
- 상속공제는 일정한도까지만 공제 가능함
-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5억원 초과 시만 적용))

〈표 II-2〉 상속공제¹⁾

구분	내용
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기기업상속공제: 기업상속재산가액(200억원~500억원 한도) - 기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15억원 한도)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30억원 한도)
인적공제	-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인당 1천만원 - 장애인공제: 인당 1천만원×기대연수

〈표 II-2〉의 계속

구분	내 용
일괄공제	max(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미만: 전액 2천만원~1억원: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자산가액 × 20%(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발생한 재해 손실가액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가액의 80%(5억원 한도)

주: 1)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5억원 초과시만 적용))을 한도로 공제 가능함

자료: 국세청, 2019, p. 3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3) 재산평가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등의 가액을 포함함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표 II-3〉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유형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일반건물	건물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¹⁾
임대차계약	max(보충적평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²⁾

주: 1)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함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2.asp?cinfo_key=MINF5420100720170355&menu_a=120&menu_b=200&menu_c=3000, 검색일자: 2019. 5. 27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4)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임⁵⁾
 -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자임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5) 세율

- 상속세 세율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없으며 최대 50%임
 - 세대생략 상속 시 해당 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는 해당 재산 20억원 초과 시 40%)를 가산함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II-4〉 상속세 세율(2019년)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7조

6) 신고기한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국내에 주된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증여세

1) 의의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함⁶⁾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에서 제외함

2) 과세체계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함⁷⁾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말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재산에 한해 과세됨⁸⁾

6) 국세청, 2010, p. 8.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표 II-5〉 증여세 과세체계

구분	비고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배우자</th> <th>직계존비속</th> <th>기타친족</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6억원</td> <td>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td> <td>1천만원</td> <td>없음</td> </tr> </tbody> </table>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기타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	없음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기타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천만원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10%~50%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130&menu_b=100&menu_c=3000, 검색일자: 2019. 6. 3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3) 재산평가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함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와 동일함

4) 납세의무자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임
 - 다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임
 -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소유자임

〈표 II-6〉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모든 증여재산	증여자
명의신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등에登記 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 및 건물 제외)	명의신탁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01&menu_a=130&menu_b=100&menu_c=1000, 검색일자: 2019. 6. 3.

5) 세율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함

6) 신고기한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가. 양도소득세

1) 세법상 양도의 범위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음
- 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함⁹⁾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¹⁰⁾
 -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함

9) 「소득세법」 제88조 1호

10)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 ①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 ③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는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공·경매 등, ② 대물변제¹¹⁾, ③ 공동사업의 출자¹²⁾ 등이 있음
-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또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분할 등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¹³⁾
 - 그 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는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¹⁴⁾, 명의신탁 해지, 매매원인 무효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¹⁵⁾,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¹⁶⁾, 공유물의 분할¹⁷⁾, 토지허가거래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¹⁸⁾,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¹⁹⁾ 등이 있음²⁰⁾
- 증여세 면탈을 목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함²¹⁾
 - 배우자 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받은 날로부터 3년 이

11)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처분하는 경우(대법원2002두2758, 2002.7.26),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소통칙 §88-0...3)

1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재재산46014-119, 2002.6.7),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대법2003두2137, 2003. 5. 16)

13)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 나목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15) 재일46014-77, 2000. 1. 18.

16) 대법원2002두6422, 2003. 11. 14.

17) 재산세과-656, 2009. 3. 30.

18) 대법원92누8361, 1993. 1. 15.

19) 재일46014-857, 1996. 4. 2.

20) 국세청, 『201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pp. 100~105.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내에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자신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증여 추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한 부분은 부과 취소함

□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²²⁾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2) 과세대상 자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임

○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및 국외자산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유상거래로 인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의미함

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됨

2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물가상승 등으로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조합원입주권이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함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부동산 외의 자산(조합원입주권 제외),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국외부동산,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²³⁾임

- 기본공제금액은 거주자별로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을 국내자산, 국외자산,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씩 공제함²⁴⁾
 -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파생상품은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세 가지 양도소득 유형은 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코넥스상장·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③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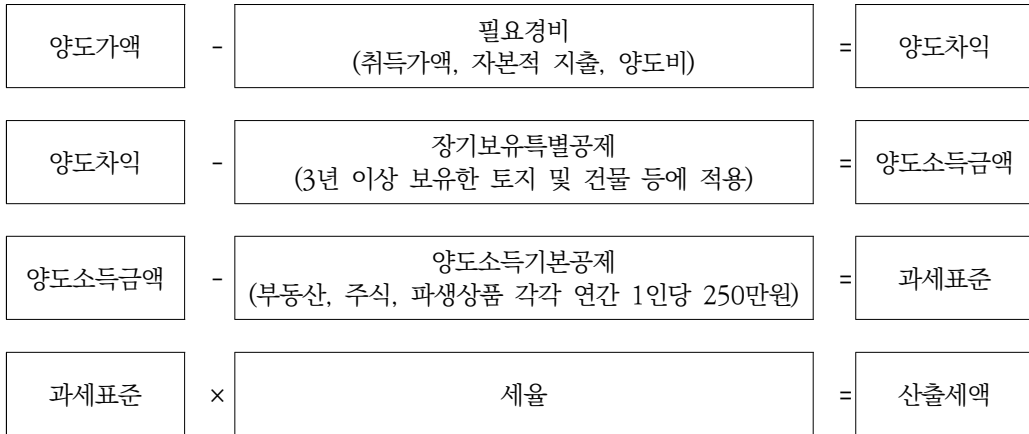
-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도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 유형별로 통산함²⁵⁾

23) 중과대상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18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함

24)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25)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그림 II-1] 양도소득 과세체계



자료: 국세청, 『201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9, p. 142.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준시가를 과세원칙으로 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²⁶⁾
 - 양도차액 산출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와 정부에서 결정·경정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출방법에 차이가 있음
 -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²⁷⁾, 양도가액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²⁸⁾

26) 국세청, 『201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9, p. 146.

27)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 정부가 실거래가로 결정·경정하는 경우²⁹⁾,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모두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경정할 수 있음

4) 세율

-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 유형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상이함
 -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인 6~42%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 1년 또는 2년 미만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50%,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20%p의 추가세율을 합산한 세율로 과세함

〈표 II-7〉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세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1년 미만 보유: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40%) - 1년 이상 보유: 40%(주택, 조합원입주권 6~42%) - 2년 이상 보유: 6~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10~20%p 추가¹⁾)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50%(무주택자 제외) - 비사업용 토지: 16~52%(지정지역은 10%p 추가) -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6~42%

주: 1)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자료: 국세청, 『201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9, p. 226.

29)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우리 세법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자산의 취득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유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그 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³⁰⁾
 - 상속·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³¹⁾

- 즉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전 시점의 시가로 대체됨
 -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대체로 인해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취득일로 함

- 한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배우자 등 이월과세(배우자 이월과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는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

- 배우자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특정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이용권에 한함
 - 기납부한 증여세 또는 납부할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우회양도는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재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봄³³⁾
-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우회양도로 과세함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표 II-8〉 배우자 이월과세 및 우회양도 비교

구분	배우자이월과세	우회양도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당초 증여자
과세대상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조세감소여부	조세부담 감소 여부 무관	(증여세 + 양도소득세)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기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취득시기	증여받은 날	증여자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증여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증여자의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증여세 납부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부과 배제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32)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33) 「소득세법」 제101조

-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³⁴⁾
 -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기업상속공제적용률)과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1-기업상속공제적용률))을 합한 금액임
 - 기업상속공제적용률이 100%인 경우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어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과세됨
 -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합한 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³⁵⁾

3. 자산의 무상이전 현황

가.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7년 총피상속인 수는 229,826명이며 이 중 상속세 과세대상자는 6,986명으로 3.04%에 불과함
 - 총피상속인의 96.96%에 해당하는 222,840명은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 상속재산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상속재산 중 46.12%만이 과세대상이며 53.88%는 과세미달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각종 공제로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34)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35) 김주석·이현종, 2015, p. 192.

〈표 II-9〉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과세				과세미달				합계	
	피상속인	비중	총상속재산가액	비중	피상속인	비중	총상속재산가액	비중	피상속인	총상속재산가액
09년	4,340	1.50	10,108,267	51.04	284,163	98.50	9,696,844	48.96	288,503	19,805,111
10년	4,547	1.40	9,019,117	36.07	320,498	98.60	15,985,902	63.93	325,045	25,005,019
11년	5,720	2.07	10,658,798	36.44	271,252	97.93	18,594,936	63.56	276,972	29,253,734
12년	6,201	2.16	11,229,621	42.32	280,893	97.84	15,307,820	57.68	287,094	26,537,441
13년	6,275	2.22	10,639,004	41.27	275,957	97.78	15,140,718	58.73	282,232	25,779,722
14년	7,542	2.64	13,407,488	46.49	278,181	97.36	15,432,578	53.51	285,723	28,840,066
15년	6,592	2.03	12,306,485	30.27	317,757	97.97	28,342,709	69.73	324,349	40,649,194
16년	7,393	2.60	15,264,016	42.01	276,484	97.40	21,070,827	57.99	283,877	36,334,843
17년	6,986	3.04	16,483,205	46.12	222,840	96.96	19,258,023	53.88	229,826	35,741,22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 https://www.nts.go.kr/info/info_05.asp, 검색일자: 2019. 8. 7을 참조하여 저자 제작성

- 『국세통계연보』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17년 총수증자는 326,316명이며 이 중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146,337명으로 44.85%임
 - 총수증자 중 55.15%에 해당하는 179,979명은 과세미달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증여재산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증여재산 중 22.32%는 과세미달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77.68%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속세에 비해 폭넓게 과세되고 있음
 - 이는 상속세가 다양한 공제항목을 두고 있는 반면 증여세는 인적공제만을 두고 있는 등 상속세에 비해 공제항목 및 공제한도가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표 II-10〉 증여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과세				과세미달				합계	
	인원		총증여재산가액		인원		총증여재산가액		인원	총증여 재산가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09년	96,654	45.03	15,538,913	68.12	118,011	54.97	7,272,127	31.88	214,665	22,811,040
10년	96,623	46.59	21,498,641	74.39	110,776	53.41	7,399,930	25.61	207,399	28,898,571
11년	126,409	50.26	23,045,350	76.00	125,097	49.74	7,275,857	24.00	251,506	30,321,207
12년	91,331	46.19	19,101,095	76.69	106,386	53.81	5,804,944	23.31	197,717	24,906,039
13년	109,644	47.85	24,263,935	76.58	119,499	52.15	7,420,130	23.42	229,143	31,684,065
14년	105,533	46.53	29,423,168	79.17	121,278	53.47	7,741,134	20.83	226,811	37,164,302
15년	101,136	37.86	29,746,717	76.20	166,000	62.14	9,288,731	23.80	267,136	39,035,448
16년	124,876	44.14	29,790,144	74.93	158,013	55.86	9,969,275	25.07	282,889	39,759,419
17년	146,337	44.85	42,495,431	77.68	179,979	55.15	12,212,960	22.32	326,316	54,708,39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현황」, https://www.nts.go.kr/info/info_05.asp,
검색일자: 2019. 8. 7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

- 살피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는 다양한 공제 등으로 인해 2017년 기준 과세제외자는 상속세 96.96%, 증여세 55.15%이며 재산가액 기준으로는 상속세 대상자의 53.88%, 증여세 대상자의 22.32%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또는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대체되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과세공백이 나타나게 됨
 - 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대체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크게 하는 측면이 있음

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거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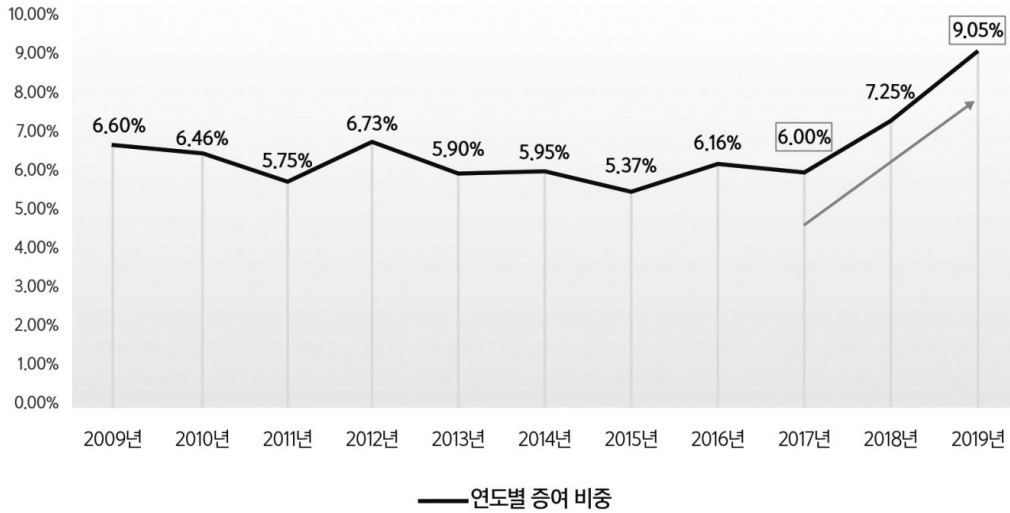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연도별 부동산 거래 비중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5.34~6.7% 사이였지만, 2017년 6%, 2018년 7.25%, 2019년 9.05%로 증가하고 있음
 -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아파트를 말하며 토지의 경우 필지, 그 외는 동호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거래현황을 집계함

- 동일 자료를 월별로 살펴보면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8월 5.33%에서 2019년 5월 현재 9.19%로 증가함

-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은 전체 양도거래 수의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각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격차 증가로 인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증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하지만, 부록의 월별 부동산거래 현황을 보면 월별 증여건수는 일정한 반면 전체 양도거래건수는 2018년 후반부터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거래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다만 세율 격차가 커질수록 이러한 조세회피 유인이 커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보유자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³⁶⁾

36) 세법 관련 주요 부동산대책

[그림 II-2] 연도별 부동산 증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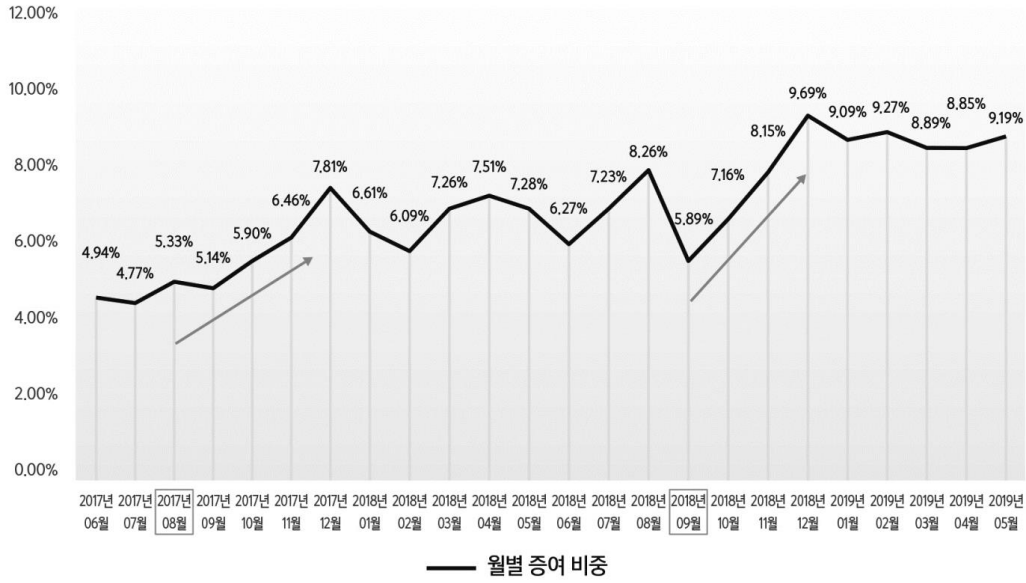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main/main.do>,
 검색일자: 2019. 7. 10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구분	주요 내용
8.2 대책 (201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자: 기본세율 + 10%p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20%p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9.13 대책 (2018.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 0.2 ~ 0.7%p 인상 • 3주택 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 + 0.1 ~ 1.2%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 → 300%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자료: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498, 검색일자: 2019. 7. 25;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TxODT1L7iRDV4CSO6xBQTvfZ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08984&fileSn=2, 검색일자: 2019. 7. 25.

[그림 II-3] 2017년 6월 이후 월별 부동산 증여 비중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main/main.do>,
 검색일자: 2019. 7. 10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Ⅲ. 주요국의 자산이전에 대한 과세제도

1. 미국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 미국은 개인이 생애 동안 또는 사망 시점에 이전한 자산의 가치에 대하여 유산세(estate tax) 또는 증여세(gift tax)를 부과하고 한 세대를 건너뛰는 수혜자(수증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를 부과함³⁷⁾
- 유산세, 증여세, 세대생략세 모두 연방정부에서 부과함

1) 유산세

가) 의의 및 과세방식

- 유산세는 상속재산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형 과세방식(estate tax system)을 취하고 있음
- 즉, 사망자로부터 상속된 자산의 수증자(beneficiaries)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과세함

37) IBFD,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Inheritance and Gift Taxes(Last Reviewed: 1 April 2019),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ita/html/ita_us_s_006.html, 검색일자: 2019. 7. 15.

- 따라서 세금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의 유산에서 납부됨
- 1976년 이후 유산세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 통합된 방식으로 과세함

나) 과세체계

- 사망자(피상속인)의 측면에서 볼 때, 유산세는 미국 시민권자인 모든 사망자와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됨³⁸⁾
 - 유산세 및 증여세의 과세목적상 거주지는 주소지(domicile)를 기준으로 함
 - 주소지의 최소 요건은 미국에서의 실제 존재와 영구적인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일반원칙 외에도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판단함
 - 유산세 목적의 거주 개념은 연방 소득세 목적의 거주 기준과 차이가 있음³⁹⁾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수취한 재산의 취득가액(tax basis)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임⁴⁰⁾
 - 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만큼 증가함
 - 유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적인 방법인 6개월 평가 규정(alternate 6-month valuation rules)을 선택하면, 그러한 대체 평가는 상속인의 재산 평가에도 적용됨⁴¹⁾
- 과세대상 유산은 총유산재산에서 허용가능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38) IRC §2001

39) 소득세 목적상 거주기준인 합법적인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와 실질적인 존재 테스트는 유산세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40) IRC §1014(a); Treas. Reg. §1.1014-1 ~ §1.1014-9

41) IRC §1014(a)(2); Treas. Reg. §1.1014-3(e)

- 과세대상 유산에 포함되는 총유산은 재산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망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 개인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모든 자산 가치임⁴²⁾
 - 사망일에 보유한 자산뿐 아니라 사망 직전 3년 내에 증여한 부분도 총유산에 포함됨
- 허용 가능한 공제는 유산에 포함된 재산과 관련하여 장례비, 관리비, 부동산에 대한 청구 또는 기타 채무⁴³⁾, 유산을 정산하는 동안 발생한 손실⁴⁴⁾, 공공, 자선 또는 종교 용도로의 이전⁴⁵⁾, 미국 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한 유산⁴⁶⁾ 등임
 - 생존하는 배우자에 대한 유산은 금액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적격한 자선단체 및 정부조직에 지출한 자선기부금의 경우에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⁴⁷⁾
- 유산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과세대상 유산의 가치에서 허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한 금액임⁴⁸⁾
 - 유산세 금액은 피상속인(사망자) 과세대상 자산의 합계와 생애 동안 있었던 증여의 누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함⁴⁹⁾
- 유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유산에 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가산하여 산출함

42) IRC §2033; Treas. Reg. §20.2033-1

43) IRC §2053; Treas. Reg. §20.2053-1 ~ §20.2053-10

44) IRC §2054; Treas. Reg. §20.2054-1

45) IRC §2055; Treas. Reg. §20.2055-1 ~ §20.2055-6

46) IRC §2056; Treas. Reg. §20.2056(a)-1 ~ §20.2056(d)-3

47) 공제 가능한 자선단체는 미국 정부, 종교·자선·과학·교육·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증여자산을 종교·자선·교육·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및 연합단체,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체) 등이 있음

48) IRC § 2001(a)

49) IRC § 2001(b)

-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s)란 1976년 이후 증여로서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가액을 의미하며, 증여세 과세면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가산하지 않음
 - 이는 유산세 과세표준을 생애 동안 있었던 증여의 누적가치를 고려하여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생전 증여에 대해 통일된 유산 및 증여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도록 함
 -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유산 평가시점이 아닌 증여시점의 평가액임
- 과세표준에 18~40%의 1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 증여세액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⁵⁰⁾
- 통합세액공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2015년 543만달러, 2016년 545만달러, 2017년 549만달러에서 2018년 1,1180만 달러로 크게 인상되었고 2019 과세연도 금액은 1,140만달러임
 - 생존 배우자는 사망배우자의 미사용 면세금액을 승계받아 생존배우자의 사망 시 사용할 수 있음
 - 통합세액공제는 평생 동안 유산이나 증여를 통해 세액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생전 증여세 계산 시 통합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면 사용한 금액을 차감조정하여 공제할 수 있음⁵¹⁾

50) IRC §2010

51) 안종석·송은주·정경화, 2014, p. 90.

〈표 III-1〉 미국의 유산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총유산재산(gross estate)	-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가액(공정시장가치)
(-) 비과세 및 공제비용	- 부채, 장례비용, 의료비, 유산관리비용, 재해손실, 공익성 유증, 주정부 상속세 공제, 배우자공제 등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post-76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1976년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 유산세 과세표준(estate tax base)	
(x) 세율	18~40%, 12단계 누진세율
(=) 잠정 유산세액(tentative estate tax)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통합세액공제	- 2019년 적용금액은 1,140만달러
(-) 외국납부 유산세 공제 등	
(=) 유산세 납부세액	

자료: 미국 국세청, "Form 706 United State Estate Tax Return," 2018; 김재진 외, 2015, p. 41. 참조 및 수정

다) 재산평가

- 유산세 목적상 자산의 가치는 사망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⁵²⁾
 - 공정시장가치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려는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않고 관련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매입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부동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정의함⁵³⁾
- 유산 집행관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 대신 대체적인 6개월 평가 규정 (alternative 6-month valuation)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⁵⁴⁾

52) 주식 및 채권, 기업 지분, 어음, 보증금, 개인물품, 연금 및 생명보험 등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 규칙에 의해 추가적인 평가 규정을 제공함

53) Treas. Reg. §20.2031-1 (b)

-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자산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하였다면, 그 판매, 교환 및 처분한 날 ②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자산가치가 유산에 포함됨

라) 납세의무자

- 유산세는 사망자의 유산에서 납부함
 -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는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음⁵⁴⁾

마) 세율

- 세율은 1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최저세율 18%, 최고세율 40%임
 - 유산세와 증여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표 III-2〉 미국의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단위: 달러, %)

과세표준	세율
10,000 이하	18
10,001 ~ 20,000	20
20,001 ~ 40,000	22
40,001 ~ 60,000	24
60,001 ~ 80,000	26
80,001 ~ 100,000	28
100,001 ~ 150,000	30
150,001 ~ 250,000	32
250,001 ~ 500,000	34
500,001 ~ 750,000	37
750,001 ~ 1,000,000	39
1,000,000 초과	40

자료: IRC §2001(c)

54) IRC §2032; Treas. Reg. §20.2032-1

55) 특정 국외로부터 받는 유산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함

바) 신고기한

- 일반적으로 유산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임
 - 납기일 이전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납기일 이전에 추정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2) 증여세

가) 의의

- 증여세란 생애 동안 증여자인 개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된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임⁵⁶⁾
 - 증여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자산의 사용 및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받을 권리 등을 어떠한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임
 - 자산이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적은 이자율 또는 이자 없는 대부 역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는 자산의 유형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에 의한 자산의 이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임⁵⁷⁾
 -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증여, 부동산 또는 개인자산, 유형 및 무형 자산, 신탁에 의한 것 등 모두 증여세의 대상임⁵⁸⁾

나) 과세체계

- 증여의 경우 당해연도 증여뿐만 아니라 이전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현행 세율을

56) IRS, Publication 559(Survivors, Executors, and Administrators), 2018, p. 25.

57) IRC § 2511(a). Treas. Reg. § 25.2501-1(a)(1)

58) Treas. Reg. § 25.2511-1(a)

적용한 금액에서 누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에 미사용 통합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함⁵⁹⁾

- 증여세 산출 시, 증여세가 도입된 1932년 이후 전체 증여를 합산한 후 면제 및 공제 금액을 차감함

□ 증여를 통해 수령한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⁶⁰⁾

-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함
- 즉, 증여시점에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공정시장가치 중 낮은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됨

□ 증여자가 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 가액만큼 증액됨⁶¹⁾

- 그러나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정시장가치를 한도로 증액이 가능함

□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⁶²⁾

- 공제 한도금액은 수증자별로 매년 적용 가능하고 공제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2019년도 공제금액은 1만 5천달러임
- 부부가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증여 금액을 분할하여 각자 증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증여세액은 부부가 연대하여(jointly and severally)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즉, 부부의 경우 매년 3만달러를 증여세 부담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음

59) 안종석·송은주·정경화, 2014, p. 93.

60) IRC § 1015(a); Treas. Reg. § 1.1015-1 ~ -5

61) IRC § 1015(d); Treas. Reg. § 1.1015-5

62) IRC § 2503(b)(1); Treas. Reg. § 25.2503-2

- 자선단체 기부금은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결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금액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⁶³⁾
- 기타 한도 없이 공제가 허용되는 증여에는 제3자를 위하여 교육단체에 지불한 등록금, 어떤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단체에 직접 지불한 의료비, 정치단체 기부금, 생일이나 졸업식 등의 선물 등이 있음⁶⁴⁾

〈표 III-3〉 미국의 증여세 과세체계

구분	비고
당해 연도 과세대상 증여	- 1인당 연간 15,000달러 이하의 증여는 과세 면제(2019년)
(+) 1932년 이후의 누적된 과세대상 증여 ¹⁾	
(-) 증여 관련 면제 및 공제	- 배우자 증여, 기부금 학자금 및 의료비 등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18~40%, 12단계 누진세율
(=) 잠정 증여세	
(-) 기납부 증여세액	
(-) 통합세액공제	- 2019년 적용금액은 1,140만달러
(=) 증여세 납부세액	

주: 1) 1932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증여시점의 평가액에 따름
 자료: 미국 국세청, "Form 706 United State Estate Tax Return," 2018; 미국 국세청, "Instructions for Form 706," 2018.

다) 재산평가

- 증여세 과세목적상 자산의 가치는 증여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함⁶⁵⁾

63) IRC § 2523 (a), Treas Reg Reg. §§ 25.2523 (a) -1 to 25.2523 (i)

64) 원종학·이형민·홍성열, 2012, p. 45.

65) IRC § 2512

- 공정시장가치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떠한 강요 없이 양측이 합리적인 지식을 갖고 매입자와 매도자 간에 교환하고자 하는 자산의 가격임⁶⁶⁾
-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여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평가 규칙을 제공함⁶⁷⁾

라) 납세의무자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임⁶⁸⁾
 - 다만, 증여세를 납부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국세청은 증여자 재산의 집행관이나 관리자 또는 상속인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까지 세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 증여받은 자산은 연방소득세 과세도 배제되므로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자체가 증여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그 소득금액이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됨⁶⁹⁾

마) 세율

- 유산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66) Treas. Reg. § 25.2512-1

67) 특정 유형의 자산에는, 지분, 어음, 생명보험, 연금계약 등이 있음

68) IRC § 2502(c), Reg. § 25.2502-2

69) IRC § 102(b), Treas. Reg. § 1.102-1(b) 및 (c)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1) 양도소득세

가) 세법상 양도의 범위

-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자산의 양도(disposition)로 발생하는 소득임⁷⁰⁾
 - 자본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손익으로 과세하고 자본자산 외 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일반손익으로 과세함
-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판매뿐만 아니라 자산의 교환, 판결에 의한 수용 및 압류 등이 포함됨⁷¹⁾
 - 자산의 판매란 현금이나 담보, 어음 및 지불약속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교환은 다른 자산이나 용역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임⁷²⁾
- 상속 및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이나 파산에 의한 자산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자산이 유산집행관이나 관리자(administrator) 또는 상속인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판매, 교환 및 기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이익이나 공제가능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70) CCH, *2017 US Master Tax Guide*, pp. 633~638.

71) IRS,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p. 2.

72) 판매 및 교환으로 취급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임대계약 중 조건부 판매계약, ② 임차인이 리스를 취소한 경우에 지불한 금액은 재산 매각으로 실현된 금액으로 간주됨, ③ 특정 매체에서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대금은 재산 매각 대가로 간주됨, ④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자산의 이전은 자산의 교환에 해당됨, ⑤ 어음의 만기 연장은 교환이나 거래로 간주하지 않으나 어음의 주요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교환으로 간주함

- 파산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나) 과세대상 자산

- 과세대상 자산은 자본자산이며, 자본자산이란 투자 및 개인용도 자산을 의미함
 - 자본자산에는 주식과 채권,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 가구, 자동차, 수집품, 보석류 등이 있음
 - 개인용도 자산의 판매 및 교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득에 해당하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재해 및 도난 손실로 처리함
 -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의 대가로 받는 것은 토지의 매각대가로 간주됨

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양도손익은 양도가격에서 양도비용을 차감한 실현가액에서 조정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과세 목적상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대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원가가 장부가액이 됨
 -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과 부대수수료가 포함되고 조정장부가액은 매입 당시의 장부가액에서 자본적 지출에 의한 증가분과 손상 및 감가상각 등에 의한 감소분을 반영한 장부가액임
 - 증여 및 상속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장부가액이 결정됨⁷³⁾
 - 자산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한 유산세액에 의하여 자산의 장부가가 증가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빙⁷⁴⁾이 있다면, 최종적인 유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상속인의 상속받은 자산의 최초 장부가액(취득원가)임

73)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참조

74) Form 8971(Information Regarding Beneficiaries Acquiring Property From a Decedent)의 Schedule A

라) 세율

- 자본자산의 판매로 발생하는 순장기양도차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⁷⁵⁾
- 양도손익은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함
 - 단기양도차익과 단기양도손실을 통산하여 산출된 순단기양도차익은 통상소득과 합산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함
 - 순단기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장기자본이익과 통산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
-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본이익을 한도로 공제 가능함
- 순단기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일반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순장기양도차익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15%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함

〈표 III-4〉 미국의 양도소득세 세율

(단위: 달러, %)

과세표준 (부부합산신고)	소득세율	장기양도소득세율
0 ~ 19,400	10	0
19,401 ~ 78,950	12	0
78,951 ~ 168,400	22	15
168,401 ~ 321,450	24	15
321,451 ~ 408,200	32	15
408,201 ~ 612,350	35	15
612,351 ~	37	20

주: 2019년 적용세율

자료: IRS,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2018, p. 67; IRS, "1040 Instruction," 2018, p. 113.

75) 법인은 장기와 단기 양도차익 모두 총소득에 포함함

2)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에 따라 산출되나,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유상이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중심으로 살펴봄

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⁷⁶⁾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공정시장가치이나 유산관리인이 대체평가를 선택하기로 한 경우 대체평가일의 공정시장가치로 결정됨⁷⁷⁾
 - 다만, 상속인이 사망일 이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주었던 자산을 상속으로 받았고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사망일의 공정시장가치가 피상속인의 조정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치가 아닌 피상속인의 조정장부가액임

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⁷⁸⁾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증여 직전에 갖고 있던 취득가액(adjusted basis),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 납부한 증여세를 기초로 결정됨
 - 증여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이익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고 손실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됨
 -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승계되는 것임

76) IRS,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 pp. 9~10.

77) 농업(farming) 및 소수주주지배회사(closely held business)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사용평가방법(special-use valuation method)에 의해 가치를 평가함

78) IRS, 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 pp. 9~10.

- 증여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만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손실(이익)이 발생하고 공정시장가치를 사용하면 이익(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음

- <사례> A가 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시점에 토지의 공정시장가치는 8,000달러, 증여자의 취득가액은 10,000달러였으며, 토지 수령 후에는 장부가액을 증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의 증여받은 토지의 장부가액과 양도차익의 산출
 - (상황 1) 토지를 12,000달러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0,000달러이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은 2,000달러임
 - (상황 2) 토지를 7,000달러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인 8,000달러이고 수증자의 양도손실은 1,000달러임
 - (상황 3) 양도가격이 9,000달러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10,000달러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1,000달러 손실이 발생하고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인 8,000달러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즉, 양도가격이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라면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증여시점에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시점에 따라 증여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취득가액을 증가시킴
 - 즉,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가산한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됨
 - 취득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도액은 증여시점의 공정시장가치임

2. 영국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1) 상속 및 증여세

가) 의의 및 과세방식

- 영국은 1986년 이전에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세 성격인 자산이전세(Capital transfer tax)로 과세하였으나 1986년부터는 상속세(Inheritance tax)로 과세하기 시작하였음⁷⁹⁾
- 영국의 경우 자산의 상속 시 상속자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속세로 과세함⁸⁰⁾
 -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고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증여가 있는 후 7년을 초과하여 증여자가 생존하는 경우 그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 면제됨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형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분배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79) 박정수, 2009, p. 199.

80) HMRC, "Inheritance Tax," <https://www.gov.uk/inheritance-tax>, 검색일자: 2019. 7. 24.

나) 과세체계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되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도 상속자산에 포함하여 과세함
 - 상속세는 사망시점에 이전되는 모든 자산 또는 생전에 신탁 등에 이전된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함⁸¹⁾
-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유산에서 부채 및 장례비용 등과 배우자공제 및 기부금 공제 등을 차감하고 신탁재산 등과 7년 이내 증여자산을 가산하여 총과세대상 유산액을 산출한 후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 총유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⁸²⁾⁸³⁾
 - 배우자 및 자선단체,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에 기부한 자산은 한도 없이 공제함
 - 325,000파운드의 기본공제(면세점) 미만의 상속자산
 - 기본공제 미만의 상속자산이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음
 - 배우자 간에는 상속세 계산 시 사용하지 못한 기본공제 금액을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그 주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제3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 주택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상속하고 상속자산의 가치가 200만파운드 미만인 경우, 상속세 면세 금액은 475,000파운드로 증가함
- 과세대상 증여는 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한 자산으로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임

81) section 5, Inheritance Tax Act 1984

82) section 18~29A, Inheritance Tax Act 1984

83) 일반적용 공제 외에 기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자산공제제도(Business Property Relief)와 농업 자산공제제도(Agricultural Property Relief)를 운영하고 있음

- 증여에 해당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자산과 저가양도로 인한 손실 금액임⁸⁴⁾
 - 예를 들어, 주택을 자녀에게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그 차액인 손실은 증여가액에 포함됨
- 소액의 증여 또는 배우자 간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 연간 3,000파운드 미만의 증여는 상속자산에 가산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간면제 금액은 1년에 한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각 과세연도별로 1인당 1,000파운드까지의 결혼선물(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는 2,500파운드, 자녀는 5,000파운드), 일상적인 선물,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노년층 친척을 돕기 위해 생활비로 지급하는 것 등
 - 자선단체 및 정당에 대한 증여
 - 과세연도 동안 1인당 250파운드를 한도로 하는 소액 기부

〈표 Ⅲ-5〉 영국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총유산	
(-) 비과세 및 공제비용	- 부채, 장례비용, 의료비, 유산관리비용 등
(=) 조정된 총유산	
(-) 배우자 공제 및 기부금 공제	- 배우자 및 자선단체, 아마추어 스포츠클럽에 기부한 자산은 한도 없이 공제
(=) 공제 감면 후 순유산	
(+) 국외재산, 신탁 등의 재산	
(=) 총과세대상 유산	
(+) 사망 전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	- 연간 3,000파운드 미만은 가산하지 않음
(=) 총 과세대상 자산	
(-) 상속세 기본공제	- 325,000파운드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40% 세율 적용
(=) 상속세 산출세액	

자료: 김재진 외, 2015, p. 88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84) HMRC, "Inheritance Tax", <https://www.gov.uk/inheritance-tax>, 검색일자: 2019. 7. 24.

다) 재산평가

- 일반적으로 상속자산의 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됨
 - 주식, 생명보험, 처분권에 제약이 있는 계약 등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는 증여시점의 시장가치로 평가됨⁸⁵⁾
 -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이전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잠재적으로 면제되는 데, 증여가 있는 후 7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잠재적 면세이전이라 함

라)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산관리인에게 있음⁸⁶⁾
 -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상속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임대되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탁에 자산을 이전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세는 해당 신탁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마) 세율

- 상속세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3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상속자산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함

85) 박정수, 2009, p. 204.

86) IBFD, "5. Inheritance and Gift Tax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b_uk_s_5.#gthb_uk_s_5. 검색 일자: 2019. 8. 7.

○ 상속자산의 10% 이상을 유언에 의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3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생전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짐⁸⁷⁾

○ 사망 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3~4년은 32%, 4~5년은 24%, 5~6년은 16%, 6~7년은 8%, 7년 이상은 0%의 세율을 적용함

바) 신고기한

□ 유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⁸⁸⁾

○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의 경우 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신고기한은 12개월이지만 신고와 납부가 대부분 동시에 이루어짐

○ 스코틀랜드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⁸⁹⁾

1) 양도소득세

가) 세법상 양도의 범위

□ 가치가 증가한 자산의 양도(dispose)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과세함⁹⁰⁾

87) HMRC, "Gift Tax," <https://www.gov.uk/inheritance-tax/gifts>, 검색일자: 2019. 8. 8.

88) EY, 2018, p. 368.

89) HMRC, "Capital Gains Tax" <https://www.gov.uk/capital-gains-tax>, 검색일자: 2019. 7. 23.

○ 과세면제금액 미만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음

□ 자산의 양도란 판매, 증여 및 타인에게 이전, 다른 자산과 교환, 분실 등에 따른 보상을 의미함

○ 자산의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의제하여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해 과세함⁹¹⁾

나) 과세대상 자산

□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개인용도 자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임대를 주었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매우 큰 거주주택, 주식, 사업용 자산임

○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산은 영국 정부채권, 복권당첨금 등임

□ 일반적으로 배우자 또는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나 배우자가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임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후에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손익은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산함

○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임

다) 자본이득세의 계산구조

□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당해 연도에 처분한 개인자산, 주식, 부동산 및 사업용 자산 별로 자본이득을 산출하고 각 자산별 자본이득을 합산한 후 공제가능한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공제가능한 손실이란 자산을 손실로 양도한 경우 발생한 자본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과세대상 자본이득에서 차감함

- 양도손실은 동일 과세연도의 양도이익을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음

90) 자본이득에 대하여 개인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함

91) 박정수, 2009, p. 144.

- 과세대상 총자본이득이 연간 과세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양도손실을 공제할 수 있음
 - 사용하지 못한 양도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연간 과세면제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19-20 과세연도의 경우 개인은 12,000 파운드, 신탁인 경우 6,000파운드임

〈표 III-6〉 영국의 연간 과세면제금액

(단위: 파운드)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개인	11,000	11,100	11,100	11,300	11,700	12,000
신탁	5,500	5,550	5,550	5,650	5,850	6,000

자료: HMRC, "Capital Gains Tax rates and allowances"

-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자산을 손실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공제할 수는 없음
 -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이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손실로 처분(giving, selling, disposing)하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상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공제할 수 없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는 ①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③ 사업 파트너 ④ 통제 가능한 회사, ⑤ 자신이 만든 신탁의 신탁관리자가 포함됨
- 자본이득은 자산의 구입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이로 산출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함
 -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일의 시장가격
 - 상속세 납부액을 알지 못하는 상속자산은 사망일의 시장가격
 - 1982년 4월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2년 3월 31일의 시장가격

라) 세율

- 영국은 주거용부동산과 그 외 자산에 세율을 다르게 적용함
 - 소득세 세율이 고세율(40%) 및 최고세율(45%)인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28%, 그 외 자산은 20%의 세율을 적용함
 - 소득세 기본세율(20%)⁹²⁾ 적용자인 경우에는 5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28%, 그 외 자산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나 50,000파운드 이하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을 적용함
- <사례> 과세소득이 20,000파운드이고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12,300파운드이며, 해당 자본이득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 과세대상 자본이득 12,300파운드에서 연간 면제인 12,000파운드를 차감하고 남은 300파운드를 과세소득인 20,000파운드와 합산한 금액이 20,300파운드이므로 기본세율 적용자임
 -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은 30파운드임

〈표 III-7〉 영국의 자본이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기본세율(10%) 적용자	50,000파운드 이하	10%
	50,000파운드 초과	거주용 부동산: 28% 그 외 자산: 20%
그 외 세율(40%, 45%) 적용자		거주용 부동산: 28% 그 외 자산: 20%

자료: HMRC, "Capital Gains Tax," 6

92) 소득세율

구분	세율	과세표준(파운드)
기본세율(Basic rate)	20%	12,501~50,000
고세율(Higher rate)	40%	50,001~150,000
최고세율(Additional rate)	45%	150,000 초과

마) 신고 및 납부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의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시점에 신고 및 납부하거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세금신고서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음
- 세금신고서 작성을 위해 최소 1년 동안 신고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기업은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
 - 자산을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 수수료나 개선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 할부 지급액, 자산 손상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하여 날짜와 금액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자산매매계약 및 평가액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

2)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과 증여에서 차이가 없음
 - 상속으로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 시 시가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상속시점에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속 시 시가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은 더 이상 과세될 수 없음
 - 영국의 경우 자산의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점의 시가가 되므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본이득세는 증여받은 이후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증여자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은 증여시점에 이미 자본이득세로 과세하였으므로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에 추가로 과세할 부분은 없음

3. 일본

가. 자산의 무상이전 시 과세

1) 상속세

가) 의의 및 과세방식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상속인이 그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함⁹³⁾
 -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축적한 재산을 상속 개시시점에서 청산한다는 점에서 소득세 보완기능과 상속인 등이 얻은 우연한 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으로 구분됨
 - 유산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임
 - 유산취득세형은 개별 상속인 등이 취득한 유산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임
- 일본은 유산세형과 유산취득세형이 혼합된 수정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음
 -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산총액(유산세형)을 계산하고 법정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각 법정 상속인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후 실제 취득비율로 안분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함(취득세형)
 - 1905년 상속세법 도입 시 과세체계는 유산세형이었으나 1950년 유산취득세형

9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ntc/kohon/souzoku/pdf/30/01.pdf#page=1>, 검색일자: 2019. 6. 10.

으로 변경하였고 1958년 세액 계산 시 유산세형 과세방식이 일부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과세체계

- 상속세는 먼저 유산총액에서 채무 및 기초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유산총액을 산정함
 - 기초공제액은 3,000만엔과 (600만엔×법정 상속인 수)를 합한 금액으로 함
- 다음으로 과세유산총액에서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대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세율을 곱하여 각 법정 상속인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상속세총액을 계산함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1/2을 상속하고 나머지 1/2를 자녀 수대로 안분함

〈표 III-8〉 일본의 법정 상속분 적용사례

상속인		법정상속분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2
	자녀	1/2 (인원수로 안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2/3
	부모	1/3 (인원수로 안분)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인원수로 안분)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4.htm, 검색일자: 2019. 7. 9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상속세총액은 다시 각 상속인별로 실제로 취득한 유산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배우자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산출함

- 배우자공제는 1억 6천만엔을 한도로 공제함
-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가 20세에 달할 때까지 매년 10만엔을 공제함
-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이 85세에 달할 때까지 매년 10만엔을 공제하며 특별장애인의 경우 매년 20만엔을 공제함
- 순유산액에 가산된 상속 시 정산과세와 상속개시 3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은 공제함

〈표 Ⅲ-9〉 일본의 상속세 과세체계

구 분	비 고
유산총액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
(+) 상속 시 정산과세	- 증여받을 때 특별공제액과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로 정산
(-) 채무, 장례비용 비과세 재산	- 비과세재산은 다음과 같음 ·묘지, 불단 등 ·국가, 지방공공단체, 특정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 ·생명보험금: (500만엔×법정 상속인 수) 한도로 비과세 ·사망퇴직금: (500만엔×법정 상속인 수) 한도로 비과세
(=) 유산액	
(+) 3년 이내 증여재산	
(=) 순유산액	
(-) 기초공제액	- 3,000만엔 + (600만엔×법정 상속인 수)
(=) 과세유산총액	
법정 상속분 대로 안분	
(×) 세율	- 10%~55%
(=) 상속세 총액	각 법정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 총합계
실제 상속비율로 안분	
(-)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1억 6천만엔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 연당 10만엔 장애인공제: 85세까지 연당 10만엔(특별장애 연당 20만엔)
(=) 납부세액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4.htm,
검색일자: 2019. 6. 10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사례> 순유산액이 2억엔이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법정 상속분 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는 <표 Ⅲ-10>과 같이 계산됨

<표 Ⅲ-10> 일본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한 경우 상속세 계산 사례

순유산액	2억엔		
(-)기초공제액	4,800만엔 (3,000만엔 + (600만엔×법정 상속인 3명))		
(=)과세유산총액	1억 5,200만엔		
법정상속분 안분	배우자	자녀1	자녀2
	7,600만엔 (50%)	3,800만엔 (25%)	3,800만엔 (25%)
	×세율	×세율	×세율
	1,580만엔	560만엔	560만엔
상속세 총액	2,700만엔		
실제 상속비율 안분	1,350만엔 (50%)	675만엔 (25%)	675만엔 (25%)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1억 6,000만엔 한도)	△ 1,350만엔		
납부할세액	0엔	675만엔	675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4.htm,
 검색일자: 2019. 6.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재산평가

- 상속재산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함
 - 토지는 노선가치 또는 배율방식으로 평가하며 주택은 재산세 평가액에 의해 평가함
 - 노선가치 및 배율방식은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

- 다만 피상속인의 소규모 택지의 경우 재산 평가 시 일정비율 감액이 적용됨
 - 소규모택지란 400㎡ 이하 사업용 토지, 330㎡ 이하 주거용 토지, 200㎡ 이하 대출용 토지를 말함
 - 소규모택지 중 사업·주거용은 80% 감액이 적용되며, 대출용은 50% 감액이 적용됨

라)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임

마) 세율

- 상속세 세율은 최대 55%임
 - 다만 자녀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20%를 가산함⁹⁴⁾

〈표 III-11〉 일본의 상속세 세율(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엔 이하	10%	-
1,000만엔 초과 3,000만엔 이하	15%	50만엔
3,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	20%	200만엔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	30%	700만엔
1억엔 초과 2억엔 이하	40%	1,700만엔
2억엔 초과 3억엔 이하	45%	2,700만엔
3억엔 초과 6억엔 이하	50%	4,200만엔
6억엔 초과	55%	7,200만엔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4.htm,
검색일자: 2019. 6. 10.

9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ozoku/4157.htm>, 검색일자:
2019. 7. 2.

바) 신고기한

- 상속세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2) 증여세

가) 의의

- 증여세는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함

나) 과세체계

- 증여세는 연도과세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기초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기초공제는 110만엔으로 매년 공제받을 수 있음⁹⁵⁾⁹⁶⁾
 - 다만 배우자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초공제 외 평생기준 최고 2,000만엔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함⁹⁷⁾
 - 결혼기간 20년이 경과한 후 증여가 이루어질 것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주거용 부동산이거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전일 것
 -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될 것

95) 「상속세법」 제21조의5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60만엔이나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110만엔이 공제됨

96) 최명근, 2007, p. 299.

9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452.htm>, 검색일자: 2019. 7. 22.

- 증여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상속 시 정산과세'란 생전 증여 시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함
 - '상속 시 정산과세'는 평생기준 2,500만엔을 공제해 주며 세율은 20% 단일세율임
 - '상속 시 정산과세' 대상은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가 2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음
 -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되며 연도과세로 변경할 수 없음

다) 재산평가

- 상속세의 재산 평가와 동일함

라) 납세의무자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임

마) 세율

- 증여세 세율은 연도과세와 '상속 시 정산과세'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연도과세는 일반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되며 누진과세로 과세표준은 달리 정하고 있으나 세율은 모두 최대 55%임
 - 특례세율은 직계존속이 1월 1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함
 - 일반세율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증여 이외에 적용함
 - '상속 시 정산과세'는 20% 단일세율을 적용함

〈표 Ⅲ-12〉 일본의 증여세 세율(2019년)

연도과세						상속 시 정산과세 세율
일반세율			특별세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율	과세표준	세율	공제율	
200만엔 이하	10%		200만엔 이하	10%		20%
300만엔 이하	15%	10만엔	400만엔 이하	15%	10만엔	
400만엔 이하	20%	25만엔	600만엔 이하	20%	30만엔	
600만엔 이하	30%	65만엔	1,000만엔 이하	30%	90만엔	
1,000만엔 이하	40%	125만엔	1,500만엔 이하	40%	190만엔	
1,500만엔 이하	45%	175만엔	3,000만엔 이하	45%	265만엔	
3,000만엔 이하	50%	250만엔	4,500만엔 이하	50%	415만엔	
3,000만엔 초과	55%	400만엔	4,500만엔 초과	55%	640만엔	

자료: 「상속세법」 제21조의7;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zoyo/4408.htm>, 검색일자: 2019. 6. 10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바) 신고기한

- 증여세는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연도의 다음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나. 자산의 유상이전 시 과세

1) 양도소득세

가) 세법상 양도의 범위

- 일본은 자산의 유상이전 따른 자본이득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두고 있음
- 양도란 교환, 경매, 공매, 대물변제, 재산분할, 수용,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소유자산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⁹⁸⁾

- 무상이전 중 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에 관한 상속, 법인에 대한 유증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한 것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⁹⁹⁾
- 다만 재고자산 양도 및 산림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¹⁰⁰⁾

나) 과세대상 자산

-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주식, 서화, 골동품, 선박, 기계, 골프회원권, 특허권, 저작권, 광업권 등임
- 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함¹⁰¹⁾
 - 토지(지상권, 임차권 포함) 및 건물, 주식 등은 분리과세하며 그 외 자산은 종합과세함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과세는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

〈표 III-13〉 일본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따른 과세방법

양도자산 종류	과세방법
토지(지상권, 임차권포함) 및 건물 등	분리과세
주식 등	분리과세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	종합과세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19. 6. 5.

98)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19. 6. 5.

99) 간주양도에 관해서는 2)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에서 설명함

100)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10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5.htm>, 검색일자: 2019. 6. 5.

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함
- 양도소득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함
 - 장기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단기양도소득은 보유기간이 5년 이하인 것을 말함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양도비용,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양도가액은 양도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취득원가는 취득가액에서 구입수수료 등 자산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더한 금액임
 - 건물의 취득원가는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며, 취득원가를 모르거나, 취득원가가 양도가액의 5%보다 적은 경우 양도가액의 5%를 취득원가로 봄
 - 양도비용은 증개수수료, 측량비, 인지대 등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함
 - 특별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액을 공제해 줌¹⁰²⁾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00만엔을 특별공제해주는 등 연간 최대 5,000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라) 세율

- 세율은 단기양도소득은 39.63%를 적용하며, 장기양도소득은 20.315%를 적용함
 - 단기양도소득은 소득세 30%, 부흥특별소득세 0.63%(소득세의 2.1%,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 주민세 9%가 합산되어 총 39.63%임

10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440.htm>, 검색일자: 2019. 6. 5.

- 장기양도소득은 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 0.315%(소득세의 2.1%,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 주민세 5%가 합산되어 총 20.315%임
- 다만 보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000만엔까지는 경감세율이 적용됨¹⁰³⁾
 - 6,000만엔 이하: 14.21%((소득세 10% + 부흥특별소득세 0.21% + 주민세 4%)
 - 6,000만엔 초과분: 20.315%(소득세 15% + 부흥특별소득세 0.315% + 주민세 5%)

〈표 III-14〉 일본의 토지 및 건물 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소유기간	세율
단기	5년 이하	39.63% (소득세 30.63% 주민세 9%)
장기	5년 초과	20.315% (소득세 15.315% 주민세 5%)
	10년 초과 거주주택	6,000만엔 이하: 14.21% (소득세 10.21%, 주민세 4%) 6,000만엔 초과: 20.315% (소득세 15.315%, 주민세 5%)

자료: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무상이전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승계함
 - 일반적으로 취득시기는 자산의 매입일이지만 무상이전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무상이전자의 취득시기가 무상취득자의 취득시기가 됨¹⁰⁴⁾
 - 보유기간의 장단기 여부도 무상이전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함

103)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2.htm, 검색일자: 2019. 6. 5.

104)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70.htm>, 검색일자: 2019. 6. 11.

- 다만 무상이전 중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으로 함
 - 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에 관한 상속, 법인에 대한 유증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한 것은 무상이전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함¹⁰⁵⁾
 - 한정승인이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¹⁰⁶⁾
 - 포괄적 유증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유증하는 것으로,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함

- 간주양도 규정은 양도소득의 본질은 가치 증가의 유무이므로 대가를 받지 않아도 양도가 성립한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임¹⁰⁷⁾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간주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¹⁰⁸⁾
 - 한정승인 등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결과가 됨
 -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고 그 매각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¹⁰⁹⁾

- 무상이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 형태에 따라 달라짐
 -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당초 취득당시 가액이며 간주양도의 경우 간주양도일의 가액으로 함¹¹⁰⁾

105) 「소득세법」 제59조

106) 일본법원, http://www.courts.go.jp/saiban/syurui_kazi/kazi_06_14/index.html, 검색일자: 2019. 6. 10.

107) 안경봉·정희선, 2006, p. 12.

108) 채현석, 2007, p. 88.

109) 채현석, 2007, p. 88.

110) 「소득세법」 제60조

〈표 III-15〉 일본의 무상이전 형태에 따른 무상취득자의 취득가액

구분	취득가액
증여, 상속, 유증	무상이전자의 당초 취득가액
간주양도 (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 개인의 포괄적 유증 중 한정승인)	무상이전 시점의 취득가액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4. 캐나다

가. 자산의 유·무상이전 시 과세

1) 세법상 양도의 범위

- 캐나다는 자산(capital property)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손실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자산의 처분이란 교환, 주식이전, 상환, 신탁, 상속, 증여 등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¹¹¹⁾
- 상속세 및 증여세는 1971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됨
 - 상속 또는 증여시점에 자산을 시장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¹¹²⁾

111)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t4037/t4037-18e.pdf>, 검색일자: 2019. 7. 4.

112)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life-events/what-when-someone-died/deemed-disposition-property.html>, 검색일자: 2019. 6. 12.

2) 자본이득세의 계산구조

- 자본이득(손실)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와 필요경비(outlays and expenses)를 차감하여 산정함
 - 취득원가란 취득가액에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임
 - 필요경비란 처분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법정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함

- 자본이득(손실)은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
 - 과세소득(taxable capital gain)은 자본이득(손실)에 소득포함률(inclusion rate)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득포함률은 연도별로 상이하며 2018년 기준 50%를 적용함
 - 이는 자본이득의 특성인 결집효과(bunching effects)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임¹¹³⁾
 - 신탁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qualified donee)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포함률은 0%임

〈표 Ⅲ-16〉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과세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

구 분	금 액	비 고
처분가액	6,500	
(-) 취득원가	4,000	
(-) 필요경비	60	
(=) 자본이득	2,440	
(×) 소득포함률	50%	2018년 소득포함률
(=) 과세소득	1,22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t4037/t4037-18e.pdf>, p 11, 검색일자: 2019. 7. 3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13) 최명근·조경엽, 2006, p. 42.

〈표 III-17〉 캐나다의 연도별 소득포함률

구분	소득포함률
1985년 5월 23일 이전	1/2 (50%)
1985년 5월 23일부터 1987년까지	1/2 (50%)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3 (66.66%)
1990년부터 1999년까지	3/4 (75%)
2000년	IR ¹⁾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2 (50%)

주: 1) 재평가에 따른 소득포함률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t4037/t4037-18e.pdf>, p 30, 검색일자: 2019. 7. 3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자본이득은 특정한 경우 과세이연(claiming a reserve)이나 자본이득공제(capital gains deduction)를 적용할 수 있음
- 과세이연은 처분대가를 몇 년에 나누어 받는 경우 과세연도에 받은 만큼만 자본이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이연이 가능함
 - 농업 및 어업용 자산, 소규모회사 주식 등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은 10년까지 가능함
 - 비거주자, 면세자,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없음
- 자본이득공제는 특정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¹¹⁴⁾
 - 특정 자산이란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어업용 자산과 소규모기업의 지분을 말함
 - 자본이득공제는 평생기준(cumulative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으로 적용되며 2018년 기준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음
 - 농업·어업용자산: 500,000캐나다달러(1,000,000캐나다달러×소득포함률 50%)
 - 소규모기업 지분: 424,126캐나다달러(848,252캐나다달러×소득포함률 50%)

114)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254-capital-gains-deduction/what-deduction-limit.html>, 검색일자: 2019. 6. 12.

- 자본손실은 당해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래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3년 소급공제하거나 무제한 이월공제함
 - <사례> A주식과 B주식의 과세소득이 각각 300캐나다달러, -500캐나다달러인 경우 순자본손실은 200캐나다달러이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순자본손실 200캐나다달러는 3년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가능함

〈표 Ⅲ-18〉 캐나다의 자본손실 계산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A주식	B주식	합계
자본이득(손실)	600	(1,000)	
(×) 소득포함률(50%)	300	(500)	
(=) 과세소득	300	(500)	(2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ub/t4037/t4037-18e.pdf>, p 30, 검색일자: 2019. 7. 3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 상속의 경우 순자본손실은 3년 소급공제하거나 최종신고(final return)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최종신고는 사망한 해의 1월 1일부터 사망개시일까지를 말함
 - <사례> 사망개시일이 2018년 6월 20일이고 순자본손실이 11,000캐나다달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급공제 또는 최종신고에서 차감함

〈표 Ⅲ-19〉 캐나다의 순자본손실 소급공제 또는 최종신고 선택 시 계산 예시

(단위: 캐나다달러)

구분	금액	비고
2018년 순자본손실	11,000	사망일 2018년 6월 20일
2016년 자본이득	4,000	
2015년 자본이득	2,000	
자본이득공제(특정 자산처분)	4,000	15년, 16년 자본이득공제는 없음

〈표 III-19〉의 계속

구분	금액	비고
소급공제 선택 시	11,000	순자본손실
	- 4,000	2016년 자본이득
	- 2,000	2015년 자본이득
	- 4,000	자본이득공제
	= 1,000	순자본손실
최종신고 선택 시	11,000	순자본손실
	- 4,000	자본이득공제
	= 7,000	순자본손실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life-events/what-when-someone-died/net-capital-losses/net-capital-losses-year-death.html>, 검색일자: 2019. 6. 12를 참고하여 저자 요약 정리

□ 자본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처분한 자임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 이내에서 자본이득세를 납부함

3) 세율

□ 자본이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방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최고 세율은 33%임

- 자본이득은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연방소득세율의 1/2임

〈표 III-20〉 캐나다 연방소득세율(2019년)

(단위: 캐나다달러, %)

구분	세율
47,630 이하	15
47,630 초과	20.5
95,259 초과	26
147,667 초과	29
210,371 초과	33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frequently-asked-questions-individuals/canadian-income-tax-rates-individuals-current-previous-years.html>, 검색일자: 2019. 7. 30.

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상속이나 증여도 재산을 유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이전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 무상이전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로 함¹¹⁵⁾

- 다만 무상이전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함¹¹⁶⁾¹¹⁷⁾
 - 무상이전자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배우자는 무상이전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attribution rule)¹¹⁸⁾
 - <사례> A가 주식을 100캐나다달러에 취득하고 주식가격이 500캐나다달러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A는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100캐나다달러임

- 한편 배우자에게 공정시장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점에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계상할 수 있음

115) 「소득세법」 제70조 제5항

116)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4조의2 제1항

117) 법률금융정보 사이트, <http://www.mondaq.com/canada/x/787564/Capital+Gains+Tax/Elections+II+Gifting+Property+To+Your+Spouse+Or+Common+Law+Partner>, 검색일자: 2019. 7. 19.

118) 「소득세법」 제74조의2 제1항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상속세

- 캐나다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은 상속세 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은 상속세 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캐나다는 상속을 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 우리나라, 미국, 영국은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세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은 수정유산취득세형을 채택하고 있음
 - 유산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임
 - 수정유산취득세형은 과세유산총액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 대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각 법정 상속인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후 실제취득비율로 다시 안분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유산관리인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은 유산관리인이 상속인의 재산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나 일본은 법정 상속인 수가 많아질수록 기본공제가 증가함

- 우리나라는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 영국은 32만 5천파운드, 일본은 3천만엔+ (6백만엔×법정 상속인)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은 1,140만달러로 기본공제 한도가 높음
- 기본공제 외 주요공제로는 배우자공제 등이 있음

〈표 IV-1〉 주요국의 상속 시 과세체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세목	상속세	유산세	상속세	상속세	자본이득세 ¹⁾
과세방식	유산세형	유산세형	유산세형	수정유산취득세형	-
납세 의무자	상속인	²⁾ (유산관리인)	²⁾ (유산관리인)	상속인	-
기본 공제	최소 5억원 ³⁾	1,140만달러	32만 5천파운드 ⁴⁾	3천만엔 + (6백만엔×법정 상속인 수)	-
기타 주요 공제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공제	- 배우자 전액공제 - 자선단체 등기부 시 전액공제	- 배우자 전액공제 - 자선단체 등기부 시 전액공제	- 배우자공제 (1억 6천만엔)	-
세율	누진세율 10~50%	누진세율 18~40%	단일세율 40% ⁵⁾	누진세율 10~55% ⁶⁾	누진세율 15~33% ⁷⁾

주: 1) 캐나다는 무상이전 시 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다만 배우자 간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가 이연됨

2) 미국 및 영국은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유산관리인이 상속세를 납부함

3)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공제는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함

4) 영국은 자녀, 손자에게 200만파운드 미만 주택 상속시 47만 5천파운드를 기본공제함

5) 영국은 상속자산의 10% 이상을 유언에 의해 기부하는 경우 36%로 저율 과세함. 사망 전 7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사망 전 3년 미만 40%, 3~4년은 32%, 4~5년은 24%, 5~6년은 16%, 6~7년은 8%, 7년 이상은 0%의 세율을 적용함

6) 일본은 자녀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율의 20%를 가산함

7) 캐나다는 자본이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적용세율은 연방소득세율의 1/2임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 상속세 세율은 대부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10~50%, 미국은 18~40%, 일본은 10~33%, 캐나다는 15~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국은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캐나다는 자본이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적용세율은 연방소득세율의 1/2로 볼 수 있음

나. 증여세

- 영국 및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은 증여세 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증여세 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캐나다, 영국은 증여에 대해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 영국은 사망 전 7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과세하고 그 외의 증여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 주요국은 증여세 계산 시 일정기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매년 과세함
 - 우리나라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며, 미국은 1932년 이후 증여분에 대해 평생합산하며, 일본은 매년 과세(연도과세)하고 있음
 - 일본은 증여 시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로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은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영국은 사망 전 7년 이내 증여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유산관리인이 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함

- 증여세 기본공제는 우리나라는 10년 이내 합산하여 공제하나 미국, 일본은 매년 적용됨
 - 우리나라는 10년간 합산하여 직계존비속 기준 5천만원을 공제하며 미국은 매년 15,000달러, 일본은 매년 110만엔을 공제함
 - 배우자의 경우 전액공제하거나 공제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0년 합산 6억원, 미국은 전액, 일본은 평생기준 2,000만엔을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음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함

〈표 IV-2〉 주요국의 증여 시 과세체계 비교¹⁾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세목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 ²⁾
과세기간	10년 이내 합산	평생합산 (1932년 이후)	연도과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수증자
기본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매년 15,000달러 (배우자 전액공제)	매년 110만엔 (배우자 평생기준 2,000만엔 추가공제)
세율	상속세와 동일	상속세와 동일	상속세와 동일

주: 1) 영국과 캐나다는 증여를 유상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다만 영국은 사망 전 7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함
 2) 일본은 증여 시 '상속 시 정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다. 양도소득세

- 주요국은 부동산 양도(처분) 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음¹¹⁹⁾

119) 우리나라, 일본은 양도소득세로, 미국, 영국, 캐나다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나 모두 자산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 같은 의미이나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구분하여 명시함

- 우리나라, 영국, 일본은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분리과세하나 미국, 캐나다는 종합과세함

- 주요국의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계산구조는 유사함
 - 양도가액(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금액(자본이득)을 산출함
 - 다만 기본공제 및 주요공제는 우리나라와 영국만 두고 있으며 그 외 국가는 별도의 공제를 두고 있지 않음
 - 기본공제로 우리나라는 연간 1인당 250만원을 공제하며 영국은 연간 1,200파운드로 기본공제 한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음
 - 기타 주요공제로 우리나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배우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세율은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일본, 영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함
 - 우리나라는 6~42%, 미국은 단기보유 시 10~37%, 장기보유 시 0~2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며 캐나다는 15~33%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자본이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적용세율은 세율의 1/2임
 - 영국은 일반적인 경우 20%, 주거용인 경우는 28%를 적용하며 일본은 단기보유 시 39.63%, 장기보유 시 2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표 IV-3〉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체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세목	양도소득세	소득세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과세유형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¹⁾
양도범위	유상	유상	유상 무상(증여)	유상 무상(한정승인 등)	유상 무상(상속·증여)
기본공제	연간 1인당 250만원	-	연간 1,200파운드	-	-
기타 주요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	배우자 과세제외	-	-
세율	누진세율 6~42%	누진세율 단기 10~37% ²⁾ 장기 0~20%	단일세율 20% (28%, 10%) ³⁾	단일세율 단기 39.63% ⁴⁾ 장기 20.315%	누진세율 15~33%

주: 1) 캐나다는 자본이득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됨
 2) 미국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세율을 적용함
 3) 영국은 주거용의 경우 28% 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 적용자이면서 자본이득 과세표준이 5만파운드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함
 4) 일본은 보유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단기세율을 적용하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세율을 적용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라.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 상속 또는 증여로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체계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함
 - 다만 무상이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함

- 상속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함
 - 일본은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승계함
 - 다만 간주양도로 보는 경우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함

- 증여의 경우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는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하나 미국, 일본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함
 - 영국, 캐나다는 증여 시 처분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아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므로 증여세가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만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대체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배우자이월과세, 우회양도,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에 대해서는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승계함
 - 일본은 간주양도로 보는 경우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함
 - 간주양도란 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에 관한 상속, 법인에 대한 유증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한 것을 말함

〈표 IV-4〉 주요국의 무상이전받은 자산의 양도(처분) 시 취득가액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상속	상속 시점의 가액 (취득가액 대체)	상속 시점의 가액 (취득가액 대체)	상속 시점의 가액 (취득가액 대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승계)	상속 시점의 가액 ¹⁾ (취득가액 대체)
증여	증여 시점의 가액 (취득가액 대체)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승계)	증여 시점의 가액 ²⁾ (취득가액 대체)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승계)	증여 시점의 가액 ¹⁾ (취득가액 대체)
예외	증여자의 취득가액 ³⁾ (취득가액 승계)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 ⁴⁾ (취득가액 대체)	

주: 1) 캐나다는 상속 및 증여 시 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2) 영국은 상속의 경우 상속세로 과세하나 증여는 유상처분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로 과세함

3)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배우자이월과세, 우회양도, 가업상속공제 이월과세에 대해 무상이전(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무상이전자(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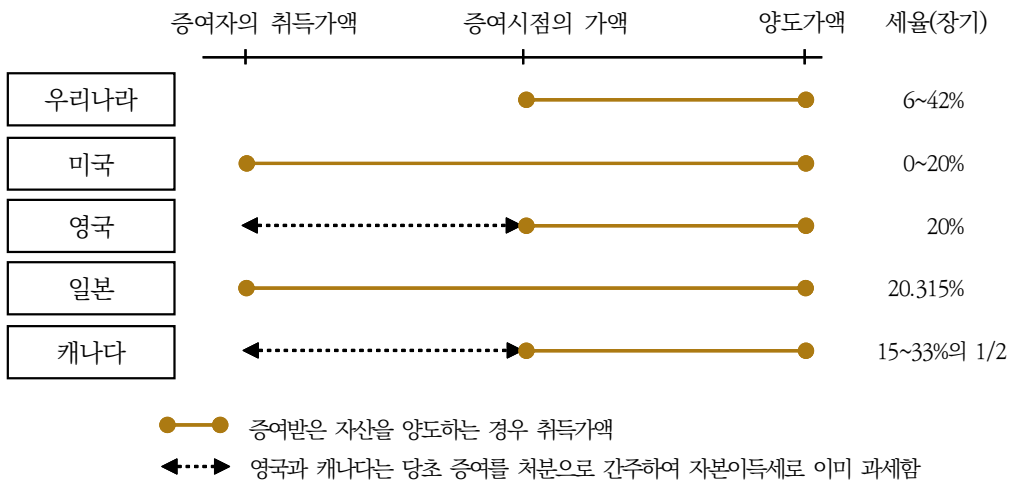
4) 일본은 예외적으로 간주양도(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에 관한 상속, 법인에 대한 유증 및 개인에 대한 포괄유증 중 한정승인에 관한 것)로 보는 경우 무상이전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자료: 본문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

- 주요국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그림 IV-1]과 같음
 - 증여를 처분으로 보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증여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있음
 - 미국, 일본과 같이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경우 과세공백은 없음

- 증여재산공제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제외되는 경우라면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음
 - 캐나다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증여 시에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과세공백은 없음
 - 다만 영국은 증여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나 기본공제로 매년 12,000파운드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공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림 IV-1] 주요국의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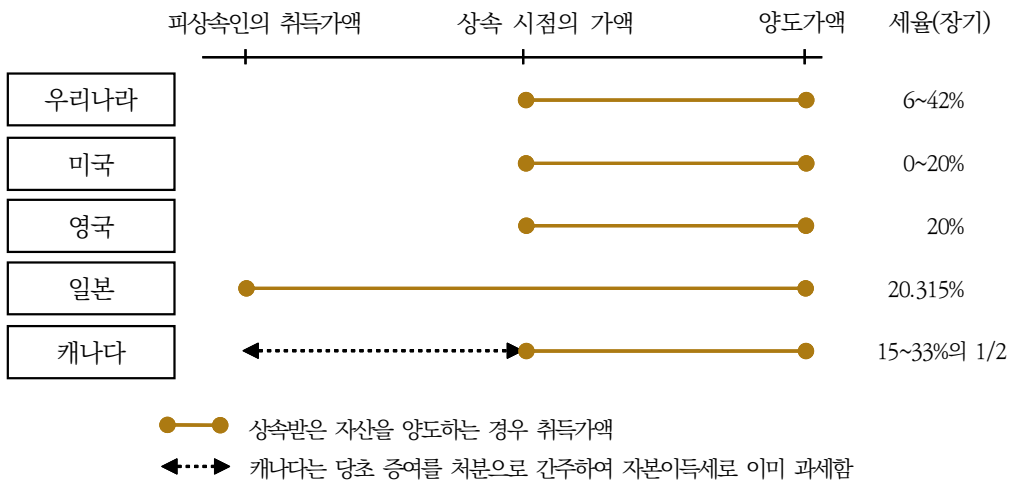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한편 증여세가 공제 등의 사유로 과세제외되고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다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으로 대체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지므로 세부담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주요국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그림 IV-2]와 같음
 - 상속을 처분으로 보아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일본에 한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승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미국, 영국은 상속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있음

- 따라서 상속재산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과세제외되는 경우라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한 구조임

[그림 IV-2] 주요국의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자료: 저자 작성

2. 시사점

가.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유상으로 매입한 자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각각 1차거래와 2차거래를 합산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함
 - 즉, 유상거래로 매입하여 유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각 거래단계별로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전체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한편, 무상거래로 취득하여 유상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상거래로 수취한 이후의 가치 증가분에만 과세하게 됨
 - 물론, 무상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상속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및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이러한 공제 규모 이내를 가정할 때 납부할 상속 및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함
- 증여 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경우 세대간 부의 이전에 있어 양도 후 이전과 직접 증여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어, 보유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와 매각 후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두 경제적 행위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경제적 행위이나 각각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담에 격차가 존재함

- 이와 같은 두 경제적 행위 간의 세부담 격차의 존재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됨
 -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양도거래 위축과 더불어 증여 유인 증가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는 세부담 격차의 존재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의도치 않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함

- 조사대상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취득가액 승계방식 또는 증여시점에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에 의해 무상이전 시 어느 정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세 여부만을 비교하면 미국과 영국은 증여의 경우 이전 소유자(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일본과 캐나다는 상속과 증여 모두 과세함
 - 구체적인 과세시기를 보면,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시점이 아닌 수증자가 양도하는 시점으로 과세시기가 이연되고 영국은 증여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짐
 - 일본과 캐나다는 상속과 증여 모두 과세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세시기에 있어서 일본은 수증자가 양도하는 시점, 즉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시점으로 이연하여 과세하고 캐나다는 상속 및 증여 발생 시점에 유상거래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음

〈표 IV-5〉 주요국의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여부

	상속	증여
한국	비과세	비과세
미국	비과세	양도 시 과세(과세이연)
영국	비과세	증여 시 과세
일본	양도 시 과세(과세이연)	양도 시 과세(과세이연)
캐나다	상속 시 과세	증여 시 과세

자료: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이상의 문제점들과 해외사례를 종합할 때 국내 과세제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즉,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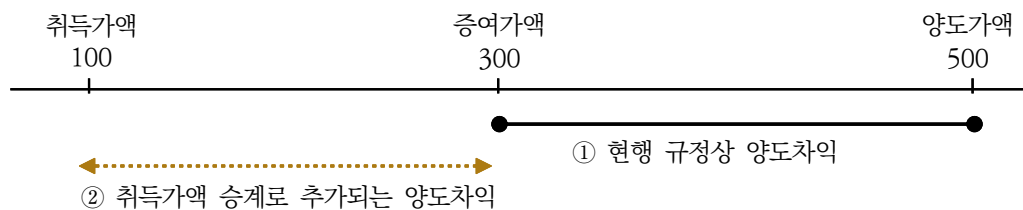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서,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논리는 확인되지 않음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세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판단됨
 -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이론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세부담이 과중한 이유는 형식적인 수익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임
 - 자본이득은 이전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무상수증익은 자산을 수령한 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상속 및 증여가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과세부담자가 구분이 안 됨
- 주요국은 증여 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속 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음
 - 상속과 증여는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속과 증여는 그 발생 원인이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 상속은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의해 이루어지나 증여는 증여시점, 증여가액 등을 임의로 구성하여 조세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증여를 중심으로 자본이득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증여받은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방안으로는 취득가액 승계와 간주양도 규정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취득가액 승계는 증여자의 자본이득을 수증자의 양도시점까지 이연하여 과세하는 효과가 있으며 간주양도 규정은 증여시점에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두 방안은 자본이득의 과세시점을 달리함

1) 취득가액 승계

- 취득가액 승계는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함으로써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공백을 제거함
- <사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100, 증여일의 자산가액이 300, 증여받은 자산의 처분가액이 500인 경우
 - 현행 규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증여일의 자산가액의 차이인 200(500-300)으로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구조이나, 취득가액을 승계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의 차이인 400(500-100)이 되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함

[그림 IV-3] 취득가액 승계로 추가되는 양도차익



자료: 저자 작성

- 보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승계 방안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배우자이월 과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1단계로 현행 이월과세 대상자를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서 증여받은 자로 확대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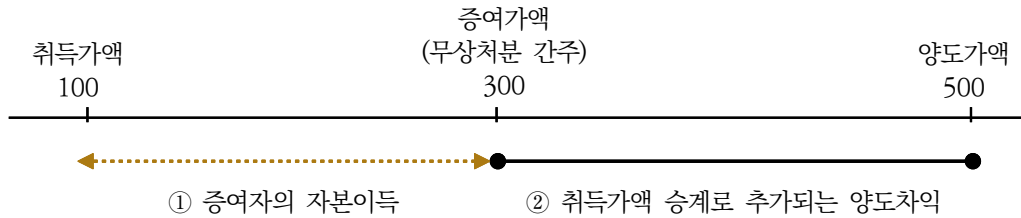
- 2단계는 1단계에서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 등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확대하고 무상이전 후 5년 이내에 양도뿐만 아니라 모든 양도에 대해 적용함
- 다만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의 소유자가 증여자에서 수증자로 변경되었음에도 과세이연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취득가액 추적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의무제도’ 도입으로 실제매매가액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고 있어 추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¹²⁰⁾ 여타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정보 확보가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취득가액 승계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2) 간주양도 규정

- 간주양도 규정은 증여 시 증여자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증가된 자본이득에 대해 유상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임
- 증여를 처분으로 보아 증여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일의 자산가액으로 하여 과세공백을 제거함
 - <사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100, 증여일의 자산가액이 300, 증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500인 경우
 - 증여시점에 유상처분으로 간주하여 증여자는 200(300-1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300이 되어 제3자에게 처분 시 양도차익 200(500-1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1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률 제7638호, 2005. 7. 29, 전부 개정

[그림 IV-4] 간주양도 시 양도차익



자료: 저자 작성

- 이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은 증여자가 납부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함
 - 취득가액 승계의 경우 증여자의 자본이득을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한편 간주양도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양도의 정의를 유상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등 개념 재정립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양도의 개념에 유상이전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증여, 한정승인 등 일부 무상이전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를 유지하면서 간주양도 규정 도입으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또한 동일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함
 - 간주양도 규정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와의 관계, 세부담 정도, 이중과세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후 향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 국세청, 『2019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19.
-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안내』, 2010.
- 김미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증여에 따른 과세제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주석·이현중, 『가업상속공제 중심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삼일인포마인, 2015.
- 김재진·김민경·김영린·유현영,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안경봉·정희선,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세법연구』, 06-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6.
- 안종석·송은주·정경화, 「주요국의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연구」, 『세법연구』, 14-1, 2014.
- 오중현·송은주·정경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6-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원종학·이형민·홍성열,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세법연구』, 12-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정승영,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경제연구원, 13-09, 2013.
- 채현석,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최명근·조경엽, 『상속세, 경제적 기회균등 보장하는가?』, 연구 06-10, 한국경제연구원, 2006.

최명근, 『상속과세 존폐론』, 경제법률포, 2007.

홍범교·김진수,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0-11, 2010.

CRA, *Capital gains 2018*, T4037(E) Rev.18

_____, *Gifts and Income Tax*, P113(E) Rev. 18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s://www.nts.go.kr/info/info_05.asp/

일본, 조세법령사이트, <https://elaws.e-gov.go.jp/>

캐나다, 조세법령사이트, <https://laws-lois.justice.gc.ca/>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s://www.r-one.co.kr/rone/resis/common/main/main.do/>

〈부록〉 부동산거래 현황

〈부표 1〉 연도별 부동산거래 현황

구분	(단위: 천필지(동호수))											
	09년	10년	11년	12년	3년	14년	15년	16년	7년	18년	19년 ³⁾	
토지	거래원인											
	매매	1,667	1,553	1,788	1,489	1,608	1,855	2,182	2,010	1,934	1,751	619
	판결	25	21	20	17	21	17	18	25	19	19	8
	교환	11	10	12	11	12	13	13	15	15	14	6
	증여	199	186	190	188	191	228	239	256	269	300	134
	분양권	207	189	215	235	310	428	521	563	962	990	327
기타	122	112	105	104	101	103	114	126	116	112	46	
합계	2,231	2,071	2,329	2,045	2,242	2,644	3,087	2,995	3,315	3,186	1,141	
건축물	매매	1,008	940	1,142	878	996	1,172	1,387	1,242	1,124	1,016	318
	판결	6	6	6	5	9	4	5	11	6	6	2
	교환	1	1	1	1	1	1	1	1	1	2	
	증여	71	64	66	66	65	81	87	97	108	131	54
	분양권	197	182	201	225	297	412	508	551	945	980	328
	기타	24	20	17	19	22	22	28	35	25	26	15
합계	1,307	1,213	1,434	1,194	1,390	1,692	2,016	1,938	2,209	2,159	718	

구분	거래원인	09년	10년	11년	12년	3년	14년	15년	16년	7년	18년	19년 ³⁾
주 택	매매	870	800	981	735	852	1,005	1,194	1,053	947	856	259
	판결	4	5	4	3	8	3	4	10	4	5	2
	교환	1	1	1	1	1	1	1	1	1	1	
	증여	62	54	56	55	54	67	73	81	89	112	45
	분양권 ¹⁾	180	163	178	198	258	358	432	171	178	129	39
	기타 ²⁾	17	15	12	13	14	14	18	308	541	616	223
	합계	1,134	1,037	1,231	1,004	1,187	1,447	1,721	1,624	1,760	1,719	569
아 파 트	매매	632	581	705	504	604	709	808	689	611	563	163
	판결	2	3	3	2	6	2	2	8	2	3	1
	교환											
	증여	33	26	27	25	25	32	34	40	48	65	25
	분양권 ¹⁾	175	157	165	179	233	323	374	169	175	128	39
	기타 ²⁾	11	9	6	6	8	6	7	228	458	562	207
	합계	853	776	906	717	876	1,071	1,226	1,135	1,294	1,321	434
증 여	총건수	365	329	339	334	336	408	433	474	514	608	259
	비율	6.60%	6.46%	5.75%	6.73%	5.90%	5.95%	5.37%	6.16%	6.00%	7.25%	9.05%
	전체거래건수	5,525	5,097	5,901	4,959	5,696	6,854	8,049	7,691	8,577	8,385	2,861

주: 1) 분양권은 분양권전매, 분양권검인을 말하며 2016년 1월부터 분양권검인은 기타항목에 포함됨

2) 기타는 협의취득계약, 현물출자 등 기타검인을 말하며 2016년 1월부터 최초공급계약, 분양권검인이 포함됨

3)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치임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s://www.r-one.co.kr/rone/common/main/main.do>, 검색일자: 2019. 7. 10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구분	거래 원인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아 파 트	매매	64	66	64	55	40	48	46	48	49	62	46	48	49	49	62	46	42	40	39	43	54	65	42	34	31	28	32	36	36		
	관결	1	
	교환
	증여	4	4	4	4	4	5	5	6	5	6	5	5	5	5	6	6	4	6	6	6	6	4	6	6	6	6	5	5	5	5	
증 여	분양권 ¹⁾	20	17	18	15	12	14	15	16	12	13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11	12	8	7	8	8	7	7	8		
	기타 ²⁾	32	43	60	48	43	49	47	65	47	54	41	47	49	53	43	42	42	42	42	42	42	42	37	46	38	47	42	34			
	합계	121	130	146	123	99	116	114	134	113	136	102	103	104	108	102	111	125	98	85	92	79	91	90	82	82	82	82	82	82		
	총건수	39	40	48	40	37	49	59	53	42	62	51	50	42	51	54	38	55	52	58	55	46	53	53	52	52	52	52	52	52		
비율	4.94%	4.77%	5.33%	5.14%	5.90%	6.46%	7.81%	6.61%	6.09%	7.26%	7.51%	7.28%	6.27%	7.23%	8.26%	5.88%	7.16%	8.15%	9.69%	9.09%	9.27%	8.89%	8.85%	9.19%	9.19%	9.19%	9.19%	9.19%	9.19%			
전체	792	835	899	783	633	761	757	804	685	854	674	688	667	705	651	652	768	642	595	601	502	594	596	569	569	569	569	569	569			

주: 1) 분양권은 분양권진매를 말함

2) 기타는 최초공공계약, 분양권검인, 협의취득계약, 현물출자 등 기타검인을 말함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https://www.r-one.co.kr/fone/tesis/common/main/main.do>, 검색일자: 2019. 7. 10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세법연구 19-04

무상이전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발 행 2019년 10월 31일

저 자 신상화 · 송은주 · 이성현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981-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법연구 19-04

무상이전자자산의 자본이득 과세 합리화 방안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